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41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제2213141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3
IV.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취지 및 구성 체계	5
2. 총괄 검토의견	10
3. 조문별 검토	11
가. 목적(안 제1조)	11
나. 정의(안 제2조)	12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15
라.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안 제	
5조, 제6조)	16
마. 통계작성 및 관리, 기술개발 촉진(안 제7조, 제8조)	19
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표준화(안 제9조)	21
사. 지능형교통체계 시범사업(안 제10조)	25
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안 제11조)	27
자. 창업 및 성장 지원(안 제12조)	29

차. 지능형교통체계 우수인증 및 표창(안 제13조 및 제20조)	30
카.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안 제14조)	32
타.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34
파.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8조)	37
하.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안 제19조)	39
거. 세제지원 등(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40
너. 부칙	42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41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9. 19.
3. 회 부 일 : 2025. 9. 22.

II. 제안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교통혼잡 완화 및 신호 운영 최적화 등 교통 효율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 및 2차 사고 방지 등 교통 안전성을 높일 수 있기에 ITS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스마트 미래교통 환경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임.

그런데 현재 지능형교통체계 추진의 법적 근거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중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조항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행정적 계획수립·시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실질적인 기술개발 및 촉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진흥 정책 등의 내용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매우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접목되어 미래의 교통 환경 구현에 반드시 필요하고, 전세계적으로 성장할 지능형교통체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별도의 법률로서 각종 산업 발전 및 진흥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첨단 교통기술 및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이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고,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시설, 서비스 등의 이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창업 및 성장지원 사업, 우수 인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지원기관 및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

기 위하여 교육훈련, 경력관리 지원, 자격제도 운영 등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에게 국·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구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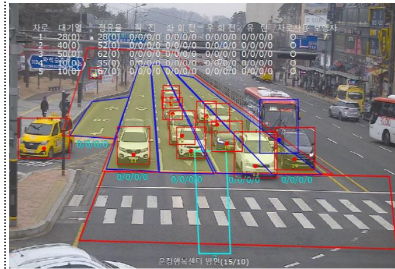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이하 ITS라 함)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통합교통체계법」이라 함)제2조 제16호에 따라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 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함.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교통 분야에 첨단 IT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고, 최근 자동차·도로 뿐만 아니라 철도, 항공, 해상 교통수단과 이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시설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음.

현재 ITS 구축·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도로분야에서는 고속도로·일반국도 등에 도로전광표지판 등 ITS 교통체계¹⁾를 구축·운영하고, ITS 교통관리정보센터²⁾를 운영하며, 대중교통서비스³⁾, 전자지불서비스(하이패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운영 중임.

1) 구체적으로 차량검지기(VDS), CCTV, 도로전광표지판(VMS), 차종분류장치(DSRC) 등이 있음.
2) 전국단위 실시간 교통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하고, 지역간 지역내 대중교통 정보 연계, 교통정책관련 통계 생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
3) 대표적으로 버스정보안내기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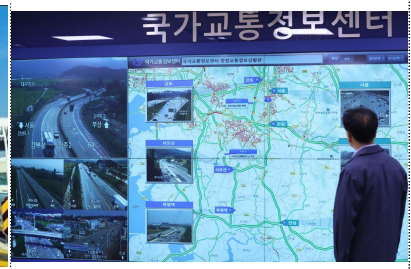
<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주요 서비스 >



<AI 신호제어>



<자동요금징수(다차로하이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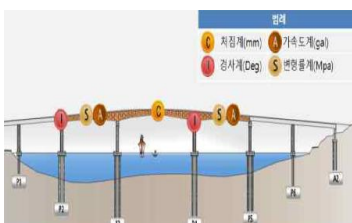


<국가교통정보센터 모니터링>

자료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철도분야에서는 실시간 열차운행정보 제공, 한국형 도시철도 신호시스템(KTCS-M), 실시간 영상감지기반 철도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운영 중이고, 항공분야에서는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스템⁴⁾, 공항협동의사결정프로그램⁵⁾ 등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해상교통분야에서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e-Navigation),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음.

< 철도·항공·해상 분야 ITS 주요 서비스 >



<IoT 기반 철도시설 원격관리>
[철도]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스템>
[항공]



<한국형 e-Navigation>
[해상]

자료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4) 항공교통의 혼잡의 사전 해소 및 항공교통량 처리능력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 5) 항공기 출도착, 지상조업 등에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프로그램

최근 10년간 ITS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9,933억원으로 2016년 6,325억원에 비해 57.0% 증가하였고, 분야별 현황은 도로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62.1%)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6년에 비해 철도 등 다른 분야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임.

< 최근 10년간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별 예산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e)
합계	6,325 (100%)	5,177 (100%)	4,750 (100%)	6,016 (100%)	7,591 (100%)	10,190 (100%)	12,106 (100%)	11,363 (100%)	11,179 (100%)	9,933 (100%)
도로	5,293 (83.7%)	4,655 (89.9%)	4,051 (85.3%)	4,991 (83.0%)	6,922 (91.2%)	6,940 (68.1%)	8,711 (72.0%)	8,273 (72.8%)	7,776 (69.6%)	6,169 (62.1%)
철도	254 (4.0%)	111 (2.1%)	156 (3.3%)	288 (4.8%)	345 (4.5%)	2,178 (21.4%)	2,144 (17.7%)	2,327 (20.5%)	1,777 (15.9%)	2,043 (20.6%)
해상	466 (7.4%)	255 (4.9%)	339 (7.1%)	408 (6.8%)	195 (2.6%)	676 (6.6%)	492 (4.1%)	264 (2.3%)	1,079 (9.7%)	1,135 (11.4%)
항공	312 (4.9%)	156 (3.0%)	204 (4.3%)	329 (5.5%)	129 (1.7%)	396 (3.9%)	759 (6.3%)	499 (4.4%)	547 (4.9%)	586 (5.9%)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을 모두 포함함.

자료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연도별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 참조.

한편, 글로벌 ITS 시장은 2034년까지 연평균 10.3%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아시아·태평양 시장은 차량 수요 증가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가예산 증가에 따라 수익성 높은 시장으로 전환중임.⁶⁾

또한 국내 ITS 기술수준은 세계 종합 4위 수준으로 평가받은 바 있고,

6) 자료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Global Market Insights Inc.,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Market Opportunity, Growth Drivers, Industry Trend Analysis, and Forecast 2025-2034, 2025 재인용)

특히 대중교통/버스 정보제공, 여행정보(내비게이션) 제공 등에서 선도적인 기술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⁷⁾ 특히 최근 통계청은 ITS 산업을 국가 통계체계인 ‘산업 특수분류’⁸⁾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ITS 산업은 국가의 새로운 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ITS에 관한 법적 근거인 「통합교통체계법」 상에서는 ITS의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공공기관의 행정적 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창업·성장 지원, 진흥시설 등 민간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접목되어 미래의 교통환경 구현에 필수적이고,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ITS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제4장 제23조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통계조사, 기술개발, 창업·성장지원, 국·공유재산 임대 및 세제지원 등 산업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7) 자료 : 국내 ITS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세계 최첨단 대비 국내 ITS 서비스 기술수준 및 격차)(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2021)

8) 산업 특수분류는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체계로는 포착이 어려운 신산업·융복합 산업을 별도 분류해 정책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계체도로 현재 통계청은 총 22개 산업에 대해 특수분류를 운용 중이며 해당 산업들은 개별 통계지표와 실태조사를 통해 별도의 국가승인통계를 추적하고 있음.

< 제정안 구성 체계 >

지능형교통체계 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본 칙 (23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다른 계획에의 반영
제3장 지능형교통체계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7조	통계작성 및 관리
	제8조	기술개발 촉진
	제9조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표준화
	제10조	지능형교통체계 시범사업
	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2조	창업 및 성장 지원
	제13조	지능형교통체계 우수 인증
	제14조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15조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및 지원
	제16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17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8조	지능형교통체계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4장 보칙	제20조	표창
	제21조	세제지원 등
	제22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부 칙		
-		시행일

2. 총괄 검토의견

제정안은 지능형교통체계 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 지능형 교통 체계의 표준화, 해외진출 지원, 진흥시설 지정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능형교통체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특히 지능형교통체계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교통환경 구현에 필수적인 분야이고, 교통안전과 교통혼잡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현행 「통합교통체계법」에서는 ITS 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지원, 진흥시설, 지원기관 등에 대한 규정은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산업화, 표준화, 민간참여 및 해외진출 등에 대해 이미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지 않고 현행 「통합교통체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는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ITS산업 진흥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독립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측면과 함께 현행 「통합교통체계법」을 개정함으로써 현행 법체계와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입법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조문별 검토

가. 목적(안 제1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 교통기술 및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 이 법의 제정 목적을 첨단 교통기술 및 교통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목적 조항은 이 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나.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교통체계”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교통체계를 말한다. 2.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란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이란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시설,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진흥시설”이란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시설 및 서비스의 융복합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지능형교통체계 시범사업”이란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시설 등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지역·기간·규모 등을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정안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 지능형교통체계⁹⁾, 지능형교통체계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 제2조제4호에서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을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시설,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지능형교통체계는 전기·전자·정보통신·

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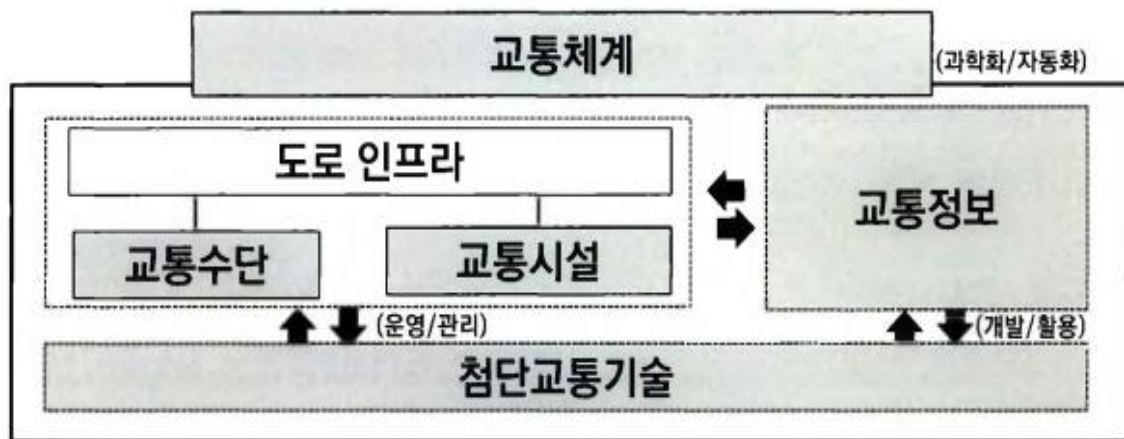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지능형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건설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제 산업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법적 정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교통체계산업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업 유형을 예시하거나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은 교통수단, 교통시설, 첨단교통기술, 교통체계와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제조·생산·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시설물 및 구조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 공사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된 바도 있음.¹⁰⁾

<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성요소 >



자료 : 이백진외 (2014), 「ITS산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평가 및 시장분석 연구」, 국토교통부, 2014

10) 이백진외, ITS산업 활성화를 위한 효과평가 및 시장분석 연구, 국토교통부, 2014.

또한, 특정 산업을 규정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제정안과 유사하게 규정한 입법례¹¹⁾와 함께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형 및 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례¹²⁾¹³⁾ 등이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음.

1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8.>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1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가공·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정보업
 -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 라. 공간정보의 생산·관리·가공·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관리 및 용역업
 -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1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 산업
 -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 산업이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지원 및 발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정안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제정안 제4조는 제정안이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지원 및 발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교통안전과 교통혼잡 해소 등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제정안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또한 제정안 제4조에서 제정안을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지원 및 발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제정안이 특별법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보임.

라.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안 제5조, 제6조)

제 정 안
제2장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연구 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진흥시설에 관한 사항 5.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국제협력 및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반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통합교통체계법」 제73조¹⁴⁾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1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는 ITS의 연구·개발, 산업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ITS 산업의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제정안 제5조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부문별 육성시책,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ITS 산업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

다만, 「통합교통체계법」 제73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과 제정안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관한 사항이 중복될 가능성이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
5.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자원

6. 그 밖에 교통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은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2. 철도교통 분야
3. 해상교통 분야(항만을 포함한다)
4. 항공교통 분야(공항을 포함한다)

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있는데, 두 계획은 수립주기¹⁵⁾가 다르고, ITS 산업 발전 관련 계획간 통일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 계획 수립시 ITS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분야 등에 관하여 두 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제정안 제6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ITS 관련 계획 수립시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계획 간의 연계성, 통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보임.

15)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통합교통체계법」) : 10년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기본계획(제정안) : 5년

마. 통계작성 및 관리, 기술개발 촉진(안 제7조, 제8조)

제 정 안
제3장 지능형교통체계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7조(통계작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8조(기술개발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연구개발 사업 2.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에 대한 평가 사업 3.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협력, 이전 등의 실용화 사업 4.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정안 제7조는 ITS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ITS 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으로, ITS가 교통, 정보통신, 건설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산업이라는 특성상 기존 산업 분류체계로는 산업 분포 등의 통계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ITS 산

업의 특성을 반영한 통계작성 및 관리 체계 구축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제정안 제8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ITS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ITS 기술 연구개발, 기술 평가, 기술 실용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ITS 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추진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7조 및 제8조는 유사 입법례¹⁶⁾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16) 「외식산업 진흥법」

제11조(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식사업자와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가상융합기술 동향·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가상융합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3. 가상융합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4. 가상융합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가상융합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1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기술 연구 개발
2. 개발된 재난안전기술의 평가
3. 재난안전기술의 협력·이전 등 실용화
4.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표준화(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시설, 서비스 등의 이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2. 지능형교통체계 구성 장비에 관한 표준화 3.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 제공자 간 호환성 확보에 관한 표준화 4. 지능형교통체계 품질관리에 관한 표준화 5.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검토의견

제정안 제9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ITS의 이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ITS 서비스, 구성장비 등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ITS의 표준화를 통해 ITS 서비스의 연동성, 호환성 확보와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현행 「통합교통체계법」 제82조¹⁷⁾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공부문 ITS 사업을 중심으로 시스템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제도를 운영 중¹⁸⁾에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제정안에 따라 민간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해서 표준화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할 경우, 민간 부분의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도한 시간 및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2) 국토교통부 의견

민간에서 자체 개발·제공하는 ITS 서비스도 빠르게 확장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ITS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표준화 필요성 측면에서는 공감함.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 ②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제정·고시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⑤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8) 교통센터↔교통센터 간 정보교환 기준, 교통센터↔현장설비 간 정보교환 기준 등 6종

다만, 민간을 포함한 ITS 산업 전 분야의 표준화 시 많은 이해관계자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과도한 시간 및 예산 투입 등 행정 비효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표준화를 의무적으로 추진시 기업별 차별화된 기술개발과 혁신 서비스 도입 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 비효율 및 기술 개발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 삭제가 필요함.

□ ITS 국가표준

- (정의) ITS의 호환성·연동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교통정보의 수집·관리·분석·제공을 위한 표준 기술

	적용범위	교환정보
기술기준 I	교통정보센터↔교통정보센터 (국가/권역/지역)	9개 기본교통정보* 및 확장 교통정보 * 교통소통정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 발생정보, 돌발상황정보,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 도로관리정보, 프로브정보, 차량검지정보
기술기준 II	교통정보센터↔현장장비 현장장비↔현장장비	교통수집정보, 교통제공정보
기술기준 III	교통정보센터→ 인터넷 기반 정보제공장치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8개 교통정보 * 교통소통정보, 돌발상황정보, CCTV 화상자료, 교통예측정보, 차량검지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정보, 주의운전구간 정보, 가변속도표지 정보
기술기준 IV	교통정보센터↔ 노변통신장치↔차량(프로브)	무선통신을 통해 교환하는 6개 기본교통정보 * 교통소통정보, 교통통제정보, 돌발상황정보, 도로상태정보, 기상정보, 프로브정보
근거리 전용통신(DSRC)을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S) 정보교환 기술기준	요금징수시스템 (노변통신장치↔차량단말기)	ETCS에 필요한 14개 송·수신 정보 * 카드정보, 최근 카드 트랜잭션정보, 소지자정보, OBU정보, 최근 OBU 트랜잭션정보, OBU 추가정보, 거래종료정보1,2, 거래내역정보, Reserved, 카드관련 상세정보, OBU ID정보, 트랜잭션 상세정보, OBU 구성정보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버스 대상 공공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버스관리정보, 안내정보를 구성하는 8개 버스정보 * 버스위치, 도착예정정보, 운행계획, 운행지시, 운행관리, 긴급상황, 기반정보버전, 기반정보
지능형교통체계 표준노드·링크 구축기준	교통체계지능화사업	표준노드링크체계를 구성 정보 * 노드정보, 회전정보, 링크정보, 링크부가정보, 차로단위 노드정보, 차로단위 링크정보, 차로단위 링크부가정보

사. 지능형교통체계 시범사업(안 제10조)

제 정 안
제10조(지능형교통체계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간·규모 등을 한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검토의견

제정안 제10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가 ITS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ITS 분야는 다양한 신기술이 복합적으로 도입되는 분야로 기술 실증 등을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주체로 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의 시행자와 유사한 의미로 보이는데, 이는 국가와 공공기관, 민간 개발사업자 등을 포함되어 있음.¹⁹⁾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①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그런데 제정안에 따른 시범사업은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관여된다는 점, 유사 입법례²⁰⁾에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국토교통부 의견

시범사업 추진주체에 “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가 포함되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 소재 모호, 신기술 검증 및 평가에 대한 정책적 통제력 약화 등이 우려 되므로, 중앙 및 지방정부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0)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형교통체계기술의 국제공동연구 협력 및 해외 현지화 2.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해외 지능형교통체계사업 무상 협력 또는 유상 협력 지원 4.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가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검토의견

제정안 제11조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ITS 산업 분야에 우수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ITS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통합교통체계법」 제89조²¹⁾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

2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해상·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운영할 때에는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ITS 산업의 국제협력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현행 「통합교통체계법」 규정과 비교하여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²²⁾

2) 국토교통부 의견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입법취지는 동의하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89조의 민간 참여 및 해외진출 활성화 조항과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필요함.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2) 이와 관련하여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2213140)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 창업 및 성장 지원(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창업 및 성장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그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및 그 밖의 상담 3. 창업에 필요한 교육 등 지원 4.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5. 지능형교통체계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지원 6. 지능형교통체계 진흥시설에 대한 우선 입주 기회 제공 7. 유상 지능형교통체계 정보의 무상제공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정안 제12조는 ITS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ITS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시제품 시험, 연구개발을 필요로 한다는 점,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²³⁾

23) 이와 관련된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상 공간정보의 무상제공
2. 공간정보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4. 공간정보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차. 지능형교통체계 우수인증 및 표창(안 제13조, 제20조)

제 정 안
제13조(지능형교통체계 우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자, 관리청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우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우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표창)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고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또는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정안 제13조는 ITS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 관리청, 서비스 등에 대하여 우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수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관리청 또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기술혁신과 성과 등을 격려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통합교통체계법」상의 품질인증제도와 구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통합교통체계법」 제83조²⁴⁾에서는 ITS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ITS 장비 및 서비스의 기능과 성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고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제정안에 따른 우수인증제도는 성능 및 품질 수준이 뛰어난 ITS 사업자, 관리청, 서비스 등을 선정하는 제도로 취지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두 제도 모두 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점, 모두 인증제도로 용어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양자간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두 제도 간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²⁵⁾

25) 참고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인증(제32조)과 스마트도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제19조의4)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양자는 인증 대상(도시에 대한 인증제도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에 있어 구분될 수 있음.

카.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안 제14조)

제 정 안
제14조(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 장비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원 2.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의 창업 및 성장 지원 3. 지능형교통체계 우수 인증 4.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장비 등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전반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원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ITS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의 발굴,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점, 최근 ITS 분야에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모빌리티 관련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어 기술개발, 창업, 실증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한편 유사 입법²⁶⁾ 등을 고려할 때,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조항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2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유통현황의 조사·분석
 2. 스마트도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3.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4. 스마트도시의 표준화 지원
 5.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수출 지원
 7. 스마트도시 인증 지원
 8.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분석
 9. 그 밖에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정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원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타.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 정 안
제15조(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예산 및 설비제공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을 조성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단체 등에게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정안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진흥시설의 지정과 지정의 해제에 대해 규정하고, 진흥시설을 조성하려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ITS 분야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특화된 집적시설 등은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반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하고 있음.

제정안은 ITS 분야의 진흥시설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ITS 분야 창업기업들에 대한 창업공간 제공, 장비 공동 활용지원, 기업 집적을 통한 산업 혁신 가속화 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제정안은 진흥시설로 지정될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건축 특례 적용과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가능케 하려는 취지임.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시 혜택 >

○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 **(세제 지원)** 집적 시설 사업시행자가 집적 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3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
- **(국공유재산)** 집적 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임대 허용(벤처법 제19조)
- **(건축 금지 특례)**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 시설 건축을 허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
- **(시설비용)** 국가나 지자체는 벤처집적 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기타)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 장식 설치 의무 면제(건축비의 1% 이내)(벤처 법 제22조 제3항)

○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세제 지원)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 (건축 금지 특례)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2,000㎡ 이하의 도시형 공장 설치 허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입주자는 공장 설립 및 제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에 대해 제정안과 유사하게 진흥시설의 지정, 지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²⁷⁾

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물을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자금 및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파.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8조)

제 정 안
제18조(지능형교통체계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5. 지능형교통체계 직무표준 및 자격제도 운영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18조는 ITS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요실태 파악, 교육훈련, 전문인력의 경력관리²⁸⁾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ITS 산업분야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ITS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²⁹⁾

③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28) 전문인력의 경력관리란 전문인력의 경력·이력 등을 국가가 인증해주는 제도로, 전문인력의 육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음

2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 전문인력의 양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소프트웨어 교육의 저변 확대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특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만,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 제18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제1항에 따른 시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사항

하.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안 제19조)

제 정 안
제19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 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국유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ITS 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에게 창업 및 실증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ITS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³⁰⁾

다만,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제19조제1항에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대·매각 대상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30) 관련된 유사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 세제지원 등(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 정 안
제21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 지원기관이나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4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담당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 제21조는 ITS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조세감면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개별 세법에서 조세감면 조치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개별법상의 감면 규정은 혼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납세자가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바로 조세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³¹⁾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제정안 제22조 및 제23조는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제127조), 수뢰, 사전수뢰 등(제129조~제132조)의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ITS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 제23조에서 “제14조제1항”은 업무의 위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31) 법제처, 「2024 법령입안심사기준」, 313p

너. 부칙

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 제정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582